변리사스쿨 7월 실전모의고사 정오표

【민법개론 정정 내용】

[1번] ②, ③ 복수정답

1.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특허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리출원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등록출원하여 거절결정이 되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도 분리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임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답변) 모의고사 출제와 인쇄가 끝난 후인 2025. 7. 24.에 선고된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판결이 변경되어 복수정답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③ (×) : 원고가 2016. 2. 6.부터 2017. 7. 6.까지 합계 1,800만 원(이는 제4 차용금의 차용 시부터 변제기까지 12개월분의 약정이자와 일치하는 액수이다)을 피고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당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할 당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판(전합) 2025. 7. 24, 2023다240299].

※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모의고사 시행일 기준으로 선고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 종합법률정보에서도 아직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다시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존재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